

법인회원권 양도 · 양수 승인신청서

본법인 소유의 귀 클럽 회원권을 하기의 양수법인에게 양도할 것을 승인합니다.

1. 회원번호 : LE56-12-

2. 양도인

법 인 명	(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입회일자	

3. 양수인

법 인 명	(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4. 구비서류

양도인	양수인
1. 명의개서신청공문 2. 법인 회원권 양도·양수 승인서 3. 매매계약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사본 7. 회원증	1. 입회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사본 6.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7. 재직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8. 수입인지 <별첨참조> 9. 사진 2매 (3×4cm)
※ 회원증분실시 : 분실공고 및 분실신고서 첨부 위 입 시 : 위임장 및 양도자 인감 증명서 별도첨부 회원등록비 : 정회원 1인당 550,000원 - 신한은행 : 140-002-589396 (주)서울레이크사이드	

201 년 월 일



(주)서울레이크사이드 귀중

<별첨>

□ 인지세액의 변경

- 관련 근거 : 인지세법 개정법률안 제3조제1항제6호
- 주요내용
 - 재산가액에 따라 2~35만원 차등 과세

구 분	인지세액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시행일 : 2010년 1월 1일